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허·가 의제 협의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5.1.12.~'15.1.3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없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지만,
- 안 제20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재원 조성과 향후 특별회계의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